

초·중학 문해교육 교원 연수 자격 요건 변경 공지

‘16.11.23,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

1] 추진 개요

- (추진배경) 농·산·어촌 등 문해교육 소외지역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*('16.8.4)에 따라 문해교육교원 자격 조건 완화·변경
- (추진경과) 문해교육 현장 · 정책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,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의결 추진
 - ※ ('15.7) 규제완화를 위한 현장 의견 수렴 → ('15.11) 시·도교육청 협의회 의견수렴 → ('16.3.2)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 → ('16.7.26) 평생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→ ('16.8.4)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→ ('16.11.3) 문해교육심의위원회 개최 → ('16.11.23) 문해교육 교원 연수 자격 요건 변경 공지
- (심의 의결) 평생교육법시행령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6조)에 의거하여 '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'의 자격 요건 의결

*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('16.8.4)

- 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지정 운영할 경우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문해교육 교원이 될 수 있었으나,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졸업자도 가능하도록 개정
-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

문해교육교원

※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

초등학교 과정

대학졸업 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 +
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이수(시행령 제70조의 2)

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과
문해교육심의위원회 인정 받은 사람 +
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이수(시행령 제70조의 2)

중학교 과정

교사자격을 가진 자 (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) +
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이수(시행령 제70조의 2)

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
문해교육심의위원회 인정 받은 사람 +
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이수(시행령 제70조의 2)

2] 변경 내용 ※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의결('16.11.23)

□ 초등 문해교육교원 연수 자격 요건

구분	초등 문해교육 교원 연수 자격 요건
당초	· 대학(교) 졸업자 · 고졸 이후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교육관련 자원봉사 경력자
변경	· 대학* 및 전문대학** 졸업자 ·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2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

*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1)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

**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2)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

□ 중학 문해교육교원 연수 자격 요건

구분	중학 문해교육 교원 연수 자격 요건
당초	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 소지자
변경	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 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 소지자 · 대학* 졸업 이후 연속 2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 문해교육 관련 경력을 가진 자

*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소지자

3] 기타 사항

-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(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의 2에 해당하는 기관)은 평생교육법 시행령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6조 등)에 의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의결 사항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모집·관리하여야 함.

1) 고등교육법 제35조(학위의 수여) ① 대학(산업대학·교육대학을 포함하며,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.
2) 고등교육법 제50조(학위의 수여)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.